



일진다이아몬드지회 손해배상 안 해도 된다

법원, 정의행위로 손해 봤다는 사측 주장 불인정 ...

“노란봉투법 입법해 자본 보복 조치 막아야”

법원이 회사가 노동조합의 정의행위로 피해를 보았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이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민주노조 파괴와 파업 파괴 수단으로 활용하는 자본의 행태에 제동을 건 것이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1 민사부는 2월 19일 일진다이아몬드 사측이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와 일진다이아몬드지회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손해액이 회사의 손실로 보기 어렵고,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노동조합이 손해를 배상할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노조 일진다이아몬드지회는 최저임금 수준의 낮은 임금과 화학물질을 다수 다루면서도 장갑, 마스크 등 기본 안전장치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19년 6월 28일 전면 합법 파업에 들어갔다.

사측은 같은 해 9월 4일 노조의

정의행위로 영업손실, 출근 지연으로 인한 인건비 손실, CCTV 파손과 미사용 기간 손해, 정의행위로 인한 경비지출이 발생했다며 모두 5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오랜 검토 끝에 원고가 제기한 영업손실, 출근 방해로 인한 인건비 손실, CCTV 파손과 사용하지 못함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경비위자료 청구 등은 모두 원고가 개별로 입증해야 하는데, 사측이 제출한 증거로 증명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지회의 정의행위 전체를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이번 법원 판결로 일진다이아몬드가 노동조합 활동을 제약하고 조합원의 이탈을 이용해 지회를 파괴하기 위해 손해배상 제도를 악용했음이 드러났다.

사측은 지회가 정의행위를 시작한 지 두 달여 만에 소송을 제기했고, 합법 정의인데 노동자가 감당

할 수 없는 5억 원의 배상액을 요구했다.

일진다이아몬드는 2020년 6월 지회가 파업을 풀고 현장에 복귀한 뒤에도 소송을 지속하며 조합원을 경제적, 정신적으로 괴롭혔다.

<손잡고(손해배상·가압류를 잡아 손에 손을 잡고)>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기업이 손배·가압류제도를 노동자에 대한 ‘보복 조치’로 손쉽게 남용하는 일이 더는 없도록 국회가 노조법 개정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손잡고>는 “손배·가압류를 막는 ‘노란봉투법’이 19대,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동안 손배·가압류로 노동권을 침해받는 사례가 계속 발생했다” 라면서 “21대 국회는 반드시 ‘노란봉투법’을 입법해 노동권이 ‘돈’으로 짓밟히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 라고 요구했다.

넉 달 걸리는 산재처리, 석 달에 하겠다?

근로복지공단 산재처리 지연 규탄 ... “산재보험행정 강화 위한 공단 개편 시급”

근로복지공단의 직업병 산업재해 지연 처리가 심각하다. 금속노조가 산재승인 상습지연을 규탄하고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금속노조는 2월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 앞에서 ‘산재처리 지연 문제 미흡한 대책으로 일관하는 근로복지공단 규탄·근본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 각 지부는 광주, 부산 등 전국 열 한곳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와 지사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동성 노조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산재보상보험제도 취지에 반하는 근로복지공단 늦장 행정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산재보상보험은 산재노동자에 대한 신속·공정한 보상과 재활을 통한 복귀를 목적으로 만든 제도다.

김동성 부위원장은 “가장 흔한 직업병인 근골격계 질환의 산재 신청부터 승인까지 넉 달 넘게 걸린다”라며 “근로복지공단의 직무유기로 산재보상보험 제도의 기본인 신속한 보상은 사라졌고, 재해노동자들은 제대로 치료받고 재활할 권리를 빼앗겼다”라고 지적했다.

금속노조는 2020년 11월부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처리 지연 해결 촉구 투쟁을 벌이고 있다. 노조는 근로복지공단과 면담에서

▲재해조사 소요기간 단축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아래 질판위) 심의사건 절대 건수 축소 ▲질판위 심의공간 확보·인력 충원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또 ‘추정의 원칙’에 해당하는 질병을 근로복지공단 각 지사가 자체 심의하고, 추정의 원칙 범위를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추정의 원칙은 작업(노출) 기간·노출량이 인정기준을 충족하면 반증이 없는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의학상 인과관계가 있으면 산재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김동성 부위원장은 “금속노조가 공단에 산재처리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명확한 방법을 알려줬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줬다”라며 “올해 1월 다시 공단에 찾아갔더니 넉 달 걸리던 산

재처리 기간을 석 달로 줄여보겠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일하다 다쳐서 하루하루 애타는 사람들에게 국가기관이 할 말이냐. 어처구니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근로복지공단은 1월 28일 금속노조와 면담에서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산재처리 기간을 줄여보겠다고 밝혔다. 박세민 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사용자단체와 자본가 눈치만 보는 근로복지공단이라는 집단을 믿을 수가 없다”라며 “공단이 밝힌 이후 계획을 신뢰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세민 실장은 “산재처리 지연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 십 년이 넘는 문제다. 치료 시기를 놓친 노동자들이 아무리 울부짖어도 공단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라며 “현재 인력으로 산재처리 업무를 감당하기 힘들다고 변명만 늘어놓지 말고, 일하다 병든 사람들의 절망이라는 오명, 늦장 무능 행정에 종지부를 찍자”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재갑 노동부 장관과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산재 지연처리 문제를 직접 책임지고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덧붙여 근로복지공단의 현재 업무량과 범위를 면밀하게 분석·검토하고 조정해 본업인 산재보험 행정을 강화하도록 조직을 재편하라고 촉구했다.

포스코, 불법기업으로 남을래? 금속노조와 해결할래

포스코 하청노동자 정규직 전환 요구 ... 대규모 금속노조 가입 운동 전개

금속노조가 포스코 광양·포항제철소 1만 8천여 명 사내하청노동자 불법파견 문제를 풀기 위해 포스코 원청에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했다. 노조는 22일 포스코에 공문을 발송하면서 첫 상견례 날짜로 3월 3일을 제안했다.

금속노조가 2월 24일 오전 서울 강남 포스코센터 앞에서 ‘포스코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특별단체교섭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특별단체교섭 요구안으로 ▲불법파견 범죄 대국민 공개사과 ▲사내하청노동자 전원 정규직 전환 ▲입사일 기준 미지급 임금 지급 ▲불법파견 즉시 중단과 법률 준수 ▲요구안 협의를 위한 노사 동수 협의체 구성을 제시했다.

법원은 최근 포스코가 불법파견을 자행하고 있다고 일관해서 판결하고 있다.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가 제기한 1차 소송 15명에 대한 2016년 광주고법의 불법파견 판결 이후, 2021년 2월 3일 2차 소송 43명, 2월 8일 4차 소송 219명 모두에게 불법파견 판결을 내렸다.

광양제철소와 포항제철소에서 일하는 사내하청노동자들은 포스코의 직접 작업지시에 따랐으므로 포스코가 실제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포스코 사내하청노동자들은 차별



임금과 복지로 고통받았다. 노조 사내하청지회에 따르면 임금은 정규직 대비 60% 수준에 불과했다.

하청노동자들은 생명과 안전조치도 차별받았다. 포스코가 추락이나 심장박동 이상 등 신체 이상을 감지해 구조신호를 발신하는 스마트워치를 현장 노동자에게 지급하겠다고 밝혔으나 사내하청노동자들은 제외됐다.

금속노조는 기자회견에서 “포스코는 법을 지키고 특별교섭에 나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며 “포스코가 특별단체교섭 요구를 거절한다면 3월 2일부터 포스코센터 앞에서 상경투쟁을 전개한다”라고 경고했다.

양기창 노조 부위원장은 “재판부가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라며 ▲사내하청노동자가 포스코 소유 설비 운전, 포스코 설비 정비 업무와 기능상 분리할 수 없는 설비 점검·관리 업무 수행 ▲원청노동자 업무와 유기적으로 밀접한 업무 수행 ▲작업사양

서·작업표준서·생산관리시스템·핵심평가지표 등 포스코가 구속력 있는 업무상 지시 등 하청업체로서 독자성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을 소개했다.

정용식 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장은 “포스코는 오래전 국민기업이라는 이미지가 있었지만, 현재는 비리, 불법, 탈법, 산재왕국, 환경오염의 주범 등 온갖 나쁜 이미지를 독차지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정용식 지회장은 “포스코가 시간 끌기로 나온다면 2만 명이 넘는 하청노동자 모두 소송에 참여하도록 조직해서 반드시 불법 상황을 해소할 것”이라면서, “사내하청지회는 대대적인 금속노조 가입 운동과 소송전을 벌일 예정이다”라고 투쟁 전망을 밝혔다.

현재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포항제철소에 1만 8천여 명의 1차 하청노동자가 100여 개 하청업체 소속으로 일하고 있다. 2차, 3차 업체에서 일하는 하청노동자까지 합하면 그 수가 수만 명에 달한다.

KEC 성차별, ‘관행이’ 저질렀다는 검찰

여성노동자 승진, 임금 차별 무혐의 처분 ... “사업주 면죄부 인정 못 해 항고”

KEC는 노동자를 채용할 때부터 남성과 여성을 차별한다. 여성노동자는 남성노동자보다 무조건 한 등급 낮은 최하위 직급으로 채용한다.

KEC는 당연하듯 승진에서 여성을 차별한다. 1988년 이후 입사한 직접 생산부서 노동자 가운데 여성은 한 명도 관리자 직급으로 올라가지 못했다.

아무리 인사고과가 좋은 사원도 여성이라면 특정 인사고과를 낮게 주는 방식으로 승격 대상에서 제외했다.

차별 3종 세트의 결정판은 임금 차별이다. 여성노동자가 올라갈 수 있는 J3 등급과 남성만 승격할 수 있는 S4, S5 등급의 임금 차이는 월 33만 원에서 56만 원까지이다. 호봉, 직책, 자격, 작업, 추가 근무 수당을 반영하지 않은 등급별 기본급과 이에 연동한 고정연장수당 한 항목만으로 비교한 수치다. 수당 등을 고려하면 연 1천만 원 정도 엄청난 차이가 난다.

금속노조 구미지부 KEC지회는 2019년 9월 10일 사측을 고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9월 19일 내린 성차별 시정 권고에서 KEC의 책임을 분명히 지적했다. 인권위는 KEC의 승진과 임금 차별을 인정하고, 성차별 해소 적극 조치 계획 수립, 시행을 권고했다.

황창섭 KEC 대표는 2019년 국정감사에서 50년 동안 저지른 KEC의



성차별을 바로 잡으라는 국회의원의 질타에 대해, “죄송하다. 시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라고 답변했다. 인사권을 행사하는 대표가 성차별을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 대구검찰청 김천지청이 지난 1월 28일 KEC의 승격 차별은 증거가 부족하고, 공고시효가 지났다는 핑계로 사측을 처벌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서를 통해 ‘KEC의 남녀 간 승격 차별은 오랜 기간 관행으로 형성돼 고착화’ 했으며, 사측에 법률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궤변을 늘어냈다.

검찰은 입만 열면 ‘기업의 인사권은 경영진의 고유권한’ 이라고 강변해왔다.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KEC 인사권은 경영진이 아니라 실체가 없는 ‘관행이’ 가 행사한 셈이다.

검찰은 ‘인권을 지키는 최고의

법집행기관이자 인권 보호기관’ 이라고 검찰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현재 KEC가 현장에서 멈추지 않고, 인권위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별이는 명백한 인권침해 범죄인 성차별을 수사 편의상 단 며칠 만에 범죄가 아니라며 애써 두둔하고 있다.

금속노조와 KEC지회는 2월 2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KEC 고질적인 남녀 승격차별 검찰의 무혐의 처분 규탄, 항고 기자회견’ 을 열었다.

노조는 “사업주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검찰이 창작한 궤변은 한심하다” 라며 “검찰의 무혐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 라고 지적했다.

노조와 지회는 “이 세상에 차별받아도 되는 노동은 없다” 라며 “그래서 우리는 항고한다. 검찰은 다시 답하라” 라고 요구했다.